

한국남부발전(주) 2019년도 제1차 체험형 청년인턴 모집

한국남부발전(주)에서 시행하는 모든 채용 방법과 절차는 응시자의 성별·신체조건·용모·학력·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거나 임직원의 가족이 우대되어 채용되지 않도록 하는 블라인드 평가 방식을 기본으로 합니다.

◎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

(단위 : 명)

근무지역	소속	지원분야*					합계	비고
		사무	발전	화학	ICT	토건		
부산	본사 또는 부산발전본부	37	15	3	1		56	근무지역 및 지원분야 선택 후 지원서 입력 가능
인천	신인천발전본부	6	6	1			13	
하동	하동발전본부	5	4	1	1	1	12	
삼척	삼척발전본부	3	5				8	
안동	안동발전본부	3	1				4	
영월	영월발전본부	1	2				3	
제주	남제주발전본부	4					4	
계	-	59	33	5	2	1	100	

* 지원분야는 배치를 위한 구분이며,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분야 선택하여 지원 가능

※ 지원자 부족으로 지원분야 예정인원만큼 선발이 불가능한 경우, 근무지역별 합계인원 범위내 타 지원분야 인원으로 선발함

- 지원분야 선발우선순위 (분야별 1명씩 순차적 선발) : 사무→발전→화학→ICT→토건

ex) 하동 3명(화학,ICT,토건) 미선발 시, 사무1→발전1→사무1 추가선발

1. 채용조건

- 채용형태 : 체험형 인턴
- 근무기간 : 3개월 또는 5개월 (채용일 기준)
- 근무시간 및 급여수준
 - 근무시간 : 8시간/1일
 - 급여수준 : 약 1,875천원 (4대보험 가입)

2. 지원자격

구 분	주요 내용
학력·전공·연령· 외국어·병역 등	○ 제한 없음
기타	○ 우리 회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 ○ '19.6.17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○ 근무지로 출·퇴근이 가능한 자 (합숙소 미제공)

3. 전형방법

전형 단계	내 용	세부사항	비고
1단계	서류전형	○ 직무능력기반 지원서 심사 - KOSPO 핵심가치에 따른 지원서 심사	2배수
2단계	면접전형	○ 면접(100점) - NCS기반 경험, 직무능력, 인성 및 조직적합성	1배수
3단계	신체검사 및 신원조회	○ 적부판정	최종합격

- (1단계) 서류전형 : 자소서 문항 심사점수 합산 고득점 순 2배수 선발
※ 동점자 처리 : 전원 합격
- (2단계) 면접전형 : 면접전형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1배수 선발
※ 동점자 처리 : 직무능력(문제해결능력 및 의사소통능력) > 조직적합성(조직이해능력)
> 인성(직업윤리) 고득점 순

4. 우대사항 적용대상

가산 유형	유형 정의	전형별 가산점	
		서류	면접
등록 장애인	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자	면제	배점의 10%
취업지원 대상자	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채용시험 가점 대상자 ○ "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" 기준 ※ '국가유공자(가족) 확인서' 인정 불가	면제	법률상 요건에 따라 배점의 10% 또는 5%

※ 가산점은 10% 한도 내 중복 인정 (단, 장애와 보훈 가점 중복 시 10% 초과 가능)

5. 제출서류 (서류제출은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)

- 기본증명서(상세) 원본 1부
- 신원진술서(작성양식 별도안내) 원본 1부
- 주민등록 초본 (병역사항 기재 필수) 또는 전역예정 증명서 원본 1부
- 최종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원본 1부
- 자격(면허)증 사본 1부 (해당자에 한함, 채용공고일 마감일 이전 자격증 발급분만 인정)
- 장애인 증빙서류 원본 1부 (해당자에 한함)
- 취업지원대상자(국가유공자 등) 증빙서류 원본 1부 (해당자에 한함)

II

채용전형 일정 및 기타사항

절 차	일 정	비 고
채용공고	'19. 5. 9(목)~ 5. 23(목) 11:00	○ 회사 홈페이지 (https://www.kospo.co.kr)
지원서 접수	'19. 5. 15(수) ~ 5. 23(목) 11:00	○ 채용 홈페이지 (https://kospo.saramin.co.kr)
면접전형 응시 대상자 발표	5월말	○ 채용 홈페이지 및 e-mail 통보
면접전형	6. 4(화)	
최종합격자 발표	6.12(수)	
근무개시	6.17(월)	

※ 채용일정은 진행 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- 「인사관리규정」제10조(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)에 해당하는 자 및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채용된 후 그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채용을 즉시 취소하고 취업규칙 제63조(해임) ①항 4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해임 처리됩니다.
- **채용유형별 중복지원 불가합니다.**
- 입사지원서 기재 착오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며,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의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지원서 허위작성, 증빙서 위변조 제출, 서류 미제출 및 시험 부정행위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자는 어느 전형단계든 당해시험 무효 및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당사 지원이 제한됩니다.
- **면접전형 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)을 지참하여야 하며,** 미지참 시 응시가 불가합니다.
- 입사지원서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시기 바라며, 마감시간 이후 제출한 지원서는 자동 불합격 처리됩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동시행령, 시행규칙에 따라 제출서류는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내에 청구된 경우 반환합니다.
- 채용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특별히 정한 내용이외에는 우리 회사 「인사관리규정」 및 「채용업무관리세칙」 등 사내외 관련 규정 및 법률, 각종 정부가이드 라인에 따릅니다.
- 채용비리 발생 시에는 우리 회사 「인사관리규정」 별표 39(채용피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)에 따라 시험기회를 부여합니다.
- **지원서 작성시** 성별, 연령, 출신 학교, 부모나 친척의 신분 등 **블라인드 채용 취지에 맞지 않는 정보 입력금지**, 입력시 불합격 처리를 포함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면접전형 응시자 중 최종합격예정자로 선발되지 않은 나머지 인원을 예비합격자로 운영하고, 합격자 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정합니다.
 - 결원 충원을 위한 예비합격자의 추가 합격발표 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개월로 함
 - 예비합격자는 향후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구제대상 우선 순위
 - 예비합격자 합격자 발표 방법 : 회사전화를 활용(070-7713-****)하여 접수된 개인 휴대전화로 3회까지 연락 후 연결 불가 시 차순위자에게 합격자 기회가 넘어 감
- 최종합격예정자(또는 최종합격자)가 일신상의 사유로 입사를 포기한 경우 문자, 이메일 등을 활용해 입사포기확인서를 징구하고 입사포기 의사를 확인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- 기타 유의사항
 - 우리 회사의 체험형 인턴 경험이 있는 경우는 지원불가 함
 - 본 인턴과정은 정규직 채용 등에 별도의 가산점이 없음
 - 신청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- 문의처
 - 채용전형관련 문의(평일 14~18시) : 한국남부발전(주) 인재경영실 ☎ 070-7713-8214, 8218

[인사관리규정 제10조 (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)]

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
 2. 파산자(破産者)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3. 금고(禁錮)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4. 금고(禁錮)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5. 금고(禁錮)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6. 징계(懲戒)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7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 8.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 또는 비위로 인한 면직사실이 있는 자
 9.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
 10.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
 11.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
 12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 13. 공무원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14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